대학평의원회(제2020-3회) 회의록

간서명	간 사	의 원	의 원	의 장
	배광성		강문석	최봉수

주관부서	대학평의원회	회의장소	혜천관 신관 2층 중회의실
회의일자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횟 수	제 2020 - 3 회
회의시간	14:00 ~ 14:55	참석인원	총 10명
참석인원	10명【최봉수, 강문석, 송재금, 석창희, 이병주, 김미자, 노태호, 강병희, 조경순, 이기윤】		
불참석인원	학생회장		
회의안건	1. 학칙 중 개정(안) 심의 건 2.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발전계획2030 변경(안) 심의 건 3. 대학 비대면 긴급지원사업 신청(안) 자문의 건 4. 2020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의 건 5. 기타 안건		
회의내용 (질문/답변 /합의결과)	**의 장** : 금일 참석한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배광성 간사에게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간 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8조 제2항에 의거 전체 재적평의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였으므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의 장** : 금일 안건은 학칙 중 개정(안) 심의,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발전계획2030 변경(안) 심의, 대학 비대면 긴급지원사업 신청(안) 자문, 2020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이며 세 번째 안건 설명을 위하여 취업복지처장이 참석한 관계로 순서 상 세 번째 안건인 대학 비대면 긴급지원사업 신청(안) 자문을 먼저 진행한다고 말한 후 취업복지처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취업복지처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따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원하는 대학들은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신청한 대학들은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하는데 본 대학교에서는 코로나19		

간서명	간 사	의 원	의 원	의 장

회의내용 (질문/답변 /합의결과)	특별장학금을 위하여 학생운영위원회, 장학위원회, 기타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면담 등을 통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4,407명의 대상학생을 선별하여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10만원 중 7만원은 교내장학금 중(308,490천원)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3만원은 자구노력을 통해 교비예산에서 지원(132,210천원)하여 총 440,700천원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하다. 교비 지원 예산 대비 일정금액은 비대면 긴급지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해주기로 하였고 지원 받은 예산 사용은 학생들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지원 및 코로나19 대비 방역비로 지출 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며 설명을 마치다. **의 장**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신청(안)에 대하여 자문할 의견이 없는 지 묻다. **이 병 주** :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에 대한 학교 측의 노력이 사업계획서(안)에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자문할 내용은 없다고 말하다. **석 창 희** : 이병주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다. **의 장**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신청(안)에 대하여 특별히 자문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말하다. **의 장** : 다음 안건은 학칙 중 개정(안) 심의라고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간사에게 세부사항 설명을 요청하며 전체 의원들에게 자료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다. **간 사** : 먼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학칙 개정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다. 학칙 개정은 개정을 원하는 부서가 개정(안)을 작성·입안하고 이를 기획홍보처에서 검토한 후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3일 간 구성원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접수된 의견서와 함께 교무위원회에 상정·심의된 개정(안)에 대하여 재차 홈페이지에 20일간의 구성원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총장결재로 확정·시행되는 것이라 말하다. 이어서 이번 학칙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 제10조 제2항은 학사일정에 따라 방학기간이 정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수정하고자 함이며, 제11조는 입학시기 기준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4주(28일)로 명기·변경한 것이라 말하다.

간서명	간 사	의 원	의 원	의 장

회의내용 (질문/답변 /합의결과)	간 사 : 제13조는 전형료의 납부 및 감면과 면제, 환불 등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음을 명기하려는 것이고 제14조는 입학전형 파트의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라 하다. 제14조의2는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맞추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로 명칭을 통일하고자 변경하는 것이고, 제16조는 편입학 관련 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7조는 규정의 올바른 명칭 표기와 재입학 관련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어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라 말하다. 제20조는 자퇴를 함에 있어 보증인 연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난해한 용어 사용을 방지하고자 보호자의 동의하에 라고 수정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시행세칙에 존재하여 이를 위한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하다.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24조는 비정규 특별과정이나 원격수업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은 추후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 제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한 것이라 말하다. 제26조는 학점관리지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생성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므로 이를 명기한 것이고, 제29조는 별지 제2호 서식이 존재하여 삽입한 것이라 말하다. 제32조는 학생회 회칙에 학생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어 학칙에 있는 내용을 삭제해 학생회비를 안 낸 학생들이 학칙 위반이 되는 사항을 없게 한 것이고 제38조는 징계절차 상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기에 이를 명기한 것이며, 제48조는 교목실 직제와 관련하여 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를 조정할 수 있게 표기를 바꾼 것이고 제49조는 본 대학이 생태조경연구소 및 국방안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삭제한 것이라 말하다. 제51조는 시간제 등록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 정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한 것이고, 제52조와 제52조의2도 마찬가지라 말하다. 제53조는 학칙 개정 절차에 맞게 각 조항의 내용들을 수정한 것이며 내용은 앞 서 말한 학칙 개정 절차와 같다고 말하다. 별표1,3은 2021학년도 학과 구조조정의 확정에 따라 입학정원 및 학사학위 등을 수정한 것으로 자료를 살펴볼 것을 요청하며 설명을 마치다.

간서명	간 사	의 원	의 원	의 장

회의내용 (질문/답변 /합의결과)	**석 창 희** : '과' 와 '학과' 사용의 차이점을 묻다. **간 사** : 이 전에는 전문대학에서의 학과 명칭 사용이 불가능했었는데 근래에 타 대학의 학과 명칭 사용을 조사해보니 전문대학임에도 학과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들이 있었고, 이를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문의해보니 학과 용어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라고 답하였기에, 명칭 변경을 원하는 학과를 접수받아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게 된 것이라 말하다. **강 문 석** : 학칙 내용 중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세부사항들을 규정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또, 정하게 되면 학칙처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인지 묻다. **간 사** : 정책 상 필요하면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들을 제정하기 위하여 문구를 그렇게 수정한 것이며 학칙을 제외한 규정들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말하다. **석 창 희** : 자퇴를 하게 되는 학생들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부모님이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묻다. **간 사** : 부모님이 안 계신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학부모가 아닌 보호자로 변경한 것이라 말하다. **노 태 호** : 대학생들은 1학년 학생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아닌데 스스로 자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다. **간 사** : 미성년자가 아니긴 하나, 본인 스스로만 결정하게 되면 학원에 다니다가 그만두는 것처럼 너무 쉽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자퇴를 하기 전에 보호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라 말하다. **강 문 석** : 학칙 개정 중 구성원의 의견이 접수되면 교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무위원회 심의 후에 접수되는 의견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묻다.

간서명	간 사	의 원	의 원	의 장
	배광성	[illegible]	강은성	최상[illegible]

회의내용 (질문/답변 /합의결과)	**김 미 자** : 개정(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수렴 기간이 3일인데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들며 바쁜 일정 속에 미처 확인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다. **간 사** : 학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하기 전에 3일 간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또, 심의 후에는 20일 간의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므로 공고기간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이며 구성원의 의견이 접수된다면 교무위원회에서 개정(안)과 함께 심의를 하며, 교무위원회 심의 후 의견수렴 때 접수된 의견이 있다면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최종(안)을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모든 의견서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처에서 의견서 제출자에게 심의 결과를 회신해주고 있다고 말하다. **노 태 호** : 교무위원회 심의 후 구성원의 의견이 접수 된다면 다시 교무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안건은 20일간 재공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다. **간 사** : 그렇게 되어 20일 간의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또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번 1건씩만 의견이 제시되면 학칙 개정을 못하게 되고, 학칙 개정은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 및 절차가 있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다. **강 문 석** : 학칙 제53조 제4항의 개정 문구 중 의견수렴 앞에 '최종'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더 명확해 보인다고 말하다.(전체 의원 동의하다) **의 장** : 해당 부분은 '최종' 의견수렴으로 수정하겠다고 말하다. 다른 질문사항이나 기타 의견사항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재청을 요청하다. **송 재 금** : 본 안건에 동의한다고 말하다. **조 경 순** : 송재금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다. (다른 의원들 재청하다) **의 장** : 학칙 중 개정(안) 심의에 전체위원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제53조 제4항 문구 수정 외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음을 선언하다.

간서명	간 사	의 원	의 원	의 장
	배광성	[illegible]	[illegible]	최병수

회의내용 (질문/답변 /합의결과)	**의 장** : 다음 안건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발전계획2030 변경(안) 심의에 대하여 간사에게 상세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대학들은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2년에 한번은 해야 하나 저희 대학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발전계획2030의 내용 중 자체평가 관련 평가지표 일부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하다. 먼저 학점관리지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 년도에는 평가가 불가능해 보류하기로 장기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였고,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은 목표 값에 비해 달성 값(실적)이 높게 나왔다고 말하고 목표 값을 타 대학 평균과 비슷한 값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교수들이 연구를 통해 많은 논문 발간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하다.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는 외국에 나가는 프로그램만이 아닌 여러 어학 프로그램도 지표에 포함되어 역시 목표 값을 수정하고자 하며, 지표 평가 방식에 따라 참여율이 아닌 참여 학생 수로 변경한다고 말하다. 지역사회 교류실적도 역시 목표 값이 낮아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2020학년도부터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건으로 유지하고 2021학년도부터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하다. **석 창 희** : 가족회사 협약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다. **간 사** :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지표이며 현장 실습 관련하여 각 회사들과 맺은 협약에 대한 것이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할 것 같다고 말하다. **의 장** : 다른 질문사항이나 기타 의견사항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다. **이 기 윤** : 본 안건에 동의한다고 말하다. **김 미 자** : 이기윤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다. (다른 의원들 재청하다) **의 장**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발전계획2030 변경(안) 심의에 전체위원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음을 선언하다.

간서명	간 사	의 원	의 원	의 장
	배광성	[illegible]	강문식	최봉수

회의내용 (질문/답변 /합의결과)	**의 장** : 마지막 안건은 2020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으로 간사에게 상세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수입은 평생교육원 단기과정 및 계약학과 수업료 감액, 한국어학원 수강료 증액 등으로 등록금 수입을 70,580천원 감액한 26,605,96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본교 80주년을 맞아 발전기금 등의 수입으로 전입및기부수입은 138,000천원 증액되어 13,208,003천원, 코로나19로 인한 기숙사 수입 감소 등으로 교육부대수입은 350,000천원 감액되어 1,237,988천원, 관사 매각 지연 이자 및 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교육외수입이 72,457천원 증액되어 284,520천원, 투자와기타자산은 천원으로 존치하였으며, 관사 매각대금 계약금으로 인해 고정자산매각수입은 300,000천원 증액되어 1,820,000천원, 조교퇴직금충당금을 반영한 고정부채입금은 30,000천원 증액된 63,400천원, 2019년 결산 이후 발생한 미사용전기이월금은 160,123천원 증액된 183,123천원이 되어 합계 43,403,000천원으로 본예산 43,123,000천원 대비 280,000천원 증액·편성하였다고 하다. 이어 지출에 대해 설명하다. 지출로는 한국어학원 강의료 증액, 직원 신규임용 및 퇴직수당 반영 등으로 보수는 174,078천원 증액된 19,841,71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예산 조성 및 신성관 배전반 교체비용 계정과목 변경(자본적 지출) 등으로 관리운영비가 935,187천원 감액되어 4,433,338천원,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편성 등으로 연구학생경비는 92,210천원 증액되어 17,568,830천원, 교육외비용은 475천원 증액되어 81,338천원, 예비비는 16,670천원 증액되어 96,521천원, 발전기금 적립 등으로 투자와기타자산은 75,500천원 증액되어 246,502천원, 신성관 배전반 교체비용 계정과목 이관(자본적 지출) 및 병영체험관 재해복구사업비 등으로 고정자산매입비는 831,600천원 증액된 1,087,100천원, 조교퇴직적립금으로 인한 고정부채상환은 24,654천원 증액된 24,654천원, 미사용차기이월금의 임대보증금 23,000천원을 포함하여 합계 43,403,000천원으로 본예산 43,123,000천원 대비 280,000천원 증액·편성하였다고 하다.

간서명	간 사	의 원	의 원	의 장
	배광성		강문석	최봉수

회의내용 (질문/답변 /합의결과)	**의 장** : 본 안건에 대해 자문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하며 질문사항이나 의견 등이 있는지 묻다. **강 문 석** : 관사 매각 대금은 모두 들어왔는지 묻다. **간 사** : 전액 수입처리 되었으며 매각 대금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수입되었고 전년도에 계약금 3억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하다. **노 태 호** : 대여료 및 사용료 수입 약 10억은 어떤 것인지 묻다. **간 사** : 기숙사와 체육관 사용 수입 계정이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숙사비와 체육관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하다. **이 병 주** :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학교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한 사항이라 판단된다고 말하다. **조 경 순**: 이병주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다.(전체의원 동의하다) **의 장** : 2020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자문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문을 마치겠다고 하고, 자문된 예산(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것이라 말하다. **의 장** : 전체의원에게 기타 다른 질문사항이 있는지 묻다. (전체의원 없다고 답하다) 전체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 뒤 폐회를 선언하다. 금일 회의 내용에 대한 명확성을 위하여 김미자의원, 강문석의원, 간사 및 의장이 기명날인 및 간서명 하기로 하다. 2020년 9월 15일 간 사 배 광 성 (인) 의 장 최 봉 수

대학평의원회 참석자 명단

1. 일　시 : 2020. 9. 15.(화) 14:00

2. 장　소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혜천관 신관 2층 중회의실

번호	의　　원	날　인	비　고
1	최　봉　수		의　　장
2	강　문　석		부　의　장
3	송　재　금		교 외 의 원
4	석　창　희		〃
5	이　병　주		〃
6	조　경　순		〃
7	김　미　자		교　　원
8	노　태　호		〃
9	이　기　윤		〃
10	강　병　희		직　　원
11	정　석　진		학 생 회 장